

서울교육대학교 · 법무부
『초등 법교육 사업』 공동추진 협약서

I. 목적

서울교육대학교와 법무부는 「초등 법교육 사업」에 공동 협력하여 21세기 선진 일류국가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이 자율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한다.

II. 협력사업

1. 서울교육대학교와 법무부는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업에 협력한다.

가.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- 서울교대 '법교육연구소' 운영 지원 및 공동사업 발굴, 법교육지원법에 의한 법교육연구소의 법문화진흥센터로의 지정 추진
- 초등 법교육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및 지원
- 초등 법교육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예비 또는 현직 교사 대상 연수과정 운영 및 지원

나. 수요자 중심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

- 초등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교육 교재 연구, 개발
-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, 개발

다. 기타 초등 법교육 활성화와 참여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 협력 및 지원

2. 서울교육대학교와 법무부는 매년 협력사업의 규모와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상기 협약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.

2009년 2월 27일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송 광 용

송 광 용



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
국장 소 병 철

소 병 철